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인

2022년 12월 13일

국 무 총 리 한 덕 수

국 무 위 원 법 무 부 장 관 한 동 훈

## ●법률 제19068호

##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제6호 중 "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"를 "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을 하는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보 호 강화 및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